

2024년 점자 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

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

I 근거

○ 「점자법」 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

-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II 결과

○ 대상 기간: 2024. 1. 1. ~ 12. 31.

○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: 해당 사항 없음

번호	요청 일자	문서명	제공 여부	제공 일자	제공 형태	분량 (목자/점자)
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

해당 사항 없음